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12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12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51424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조인명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변론종결 2023. 1. 18.

판결선고 2023. 2.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51424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20. 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4,573,219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73,2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H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는 H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H에게는 C의 채무 초과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있어 상속인들 사이의 의사 연락 및 필요 서류의 작성 또는 구비 등 사실적 행위들을 피고의 장남인 H이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피고의 주장도 전제적으로 보아 이러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을2호증(H의 진술서)의 기재 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문언도 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이러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어 H이 법률적 의미에서의 피고의 대리인, 즉 피고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약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이에 기한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H이 법률상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H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중연, 판사 최태영, 판사 선의중

별지